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

2026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전북 돌봄의 길을  
묻다!

- | 일시 : 2025. 7. 10.(목) 10:00
-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실
- | 주관 :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세 부 일 정

사회 : 박경수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시간	내 용
09:40~10:00	참석자 확인
10:00~10:10 (10')	<b>[개 회]</b>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10:10~10:40 (30')	<b>[주제발표]</b> <b>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 함께돌봄!</b> - 서양열 원장(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0:40~11:40 (60')	<b>[좌 정]</b> - 김영기 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b>[토 린]</b> - 김정수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학과) - 성이순 과장(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 - 강병은 관장(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 -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11:40~11:50 (10')	종합토론
11:50~12:00 (10')	마무리 발언 및 폐회



# 목 차

## □ 주제발표

-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 함께돌봄! ..... 5  
서양열 원장\_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 토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자체의 역할 ..... 29  
김정수 의원\_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의 역할 ... 35  
박진희 교수\_우석대학교 간호학과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41  
성이순 과장\_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토론문 ..... 47  
강병은 관장\_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토론문 ..... 53  
이중섭 선임연구위원\_전북연구원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 57  
양병준 사무국장\_전북희망나눔재단

## □ 부록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63

주제발표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 함께돌봄!

서 양 열 원장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 함께돌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

## 목 차

Table of Contents

- 01 | 돌봄에 대한 이해
- 02 | 돌봄의 현재
- 03 | 돌봄현장과 돌봄의 주요욕구
- 04 | 우리는 어디에서?
- 05 | 돌봄정책 변화와 돌봄통합지원법
- 06 | 전북형 365 함께돌봄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함께돌봄!

# 01. 돌봄에 대한 이해

## 돌봄 개념



돌봄은 단순한 보살핌에서부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과정으로 기초역량을 가르치는 부분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음

➔ 돌봄은 사람이 사람을 살피는 전 과정



## 돌봄대상의 변화

과거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현재



전국민 확대

아동, 노인, 장애인  
+  
청년, 중장년  
+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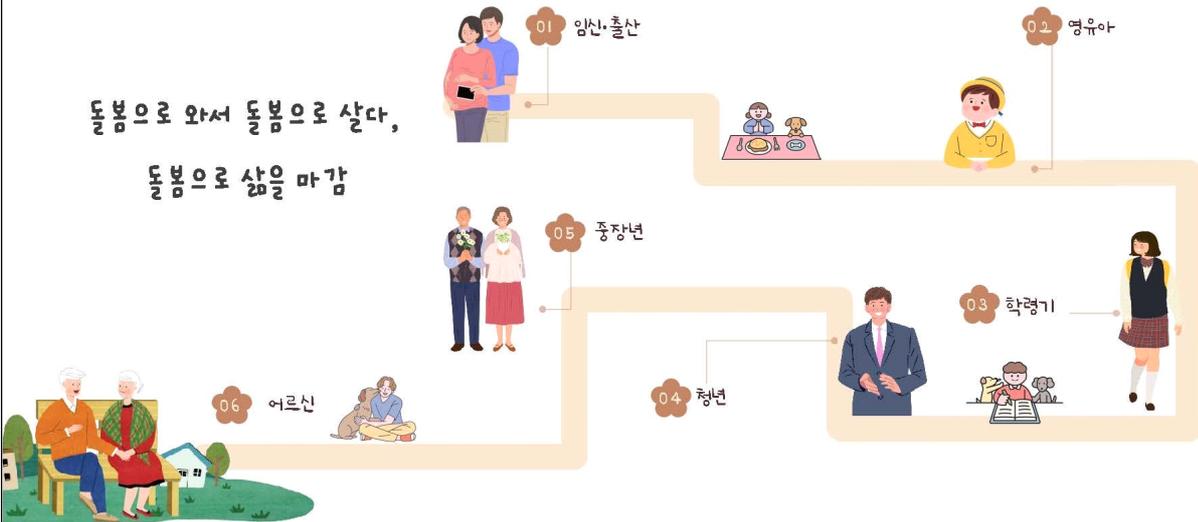
미래



모든 삶의 대상

국민  
+  
반려동물

돌봄으로 와서 돌봄으로 살다,  
돌봄으로 삶을 마감



## 돌봄 생각 나누기



- ✓ 돌봄이 보편적인 권리인가?
- ✓ 돌봄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아야 할 서비스인가?
- ✓ 개인의 돌봄까지 어떻게 국가가 다 할 수 있는가?

## 돌봄 생각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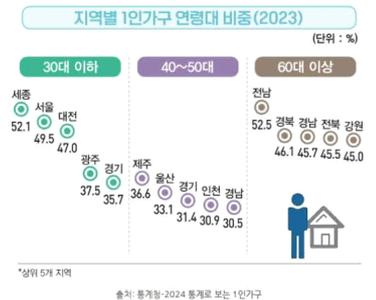
- ✓ 돌봄의 문제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까?
- ✓ 국가든 개인이든 우리의 돌봄이 질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지역사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 ✓ 사람살이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돌봄을 누리고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함께돌봄!

## 02. 돌봄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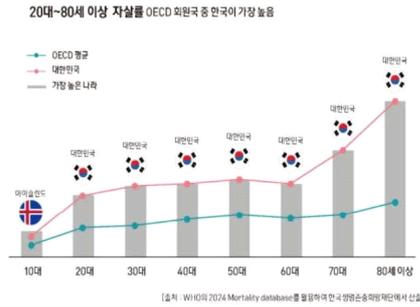
### 돌봄의 현재

가족구조 붕괴  
1인가구 시대로의 변화  
사회적 고립 증가



## 돌봄의 현재

노년기의 삶  
자살률 1위  
빈곤율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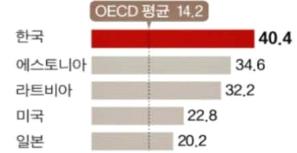
### 1인 가구 빈곤율

단위: % (기저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기준)



### 노인 빈곤율 OECD 1위

단위: %



그레픽=양유정  
yang.yujeong@joongang.co.kr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실태

## 돌봄의 현재

### ☑ 돌봄 재난

감염병 체제, 사회적고립, 공동체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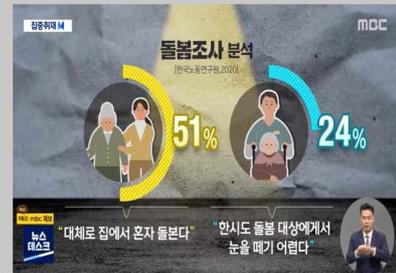
### ☑ 돌봄 독박

양육, 가족돌봄을 혼자 감당  
이중돌봄

### ☑ 돌봄 파산

육아, 간병 등 부양비용으로 가정 파산

### 현재,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은 어떤 상황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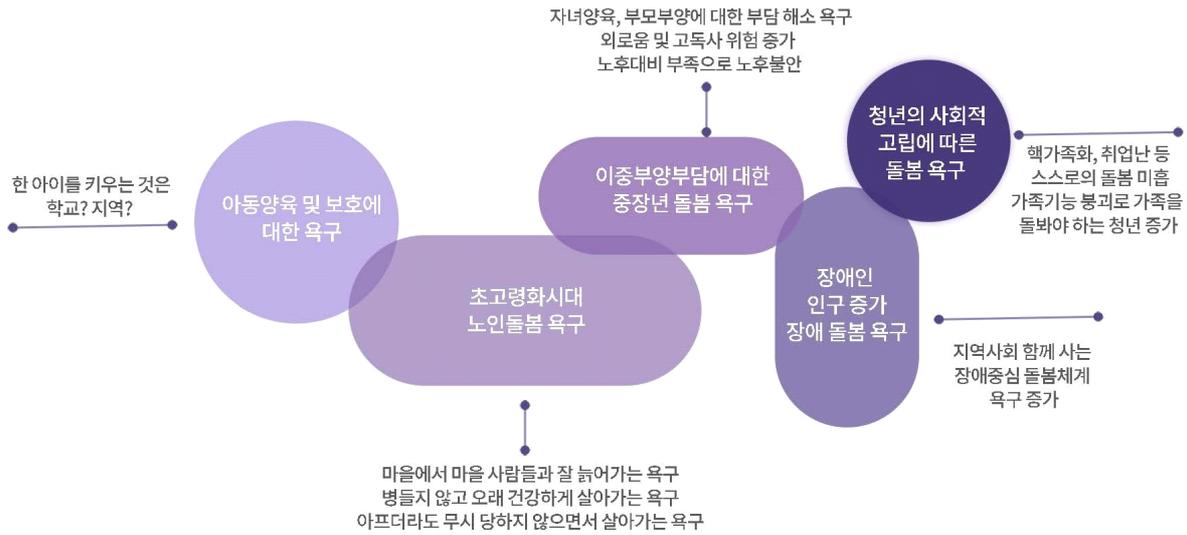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함께돌봄!

## 03. 돌봄현장과 돌봄의 주요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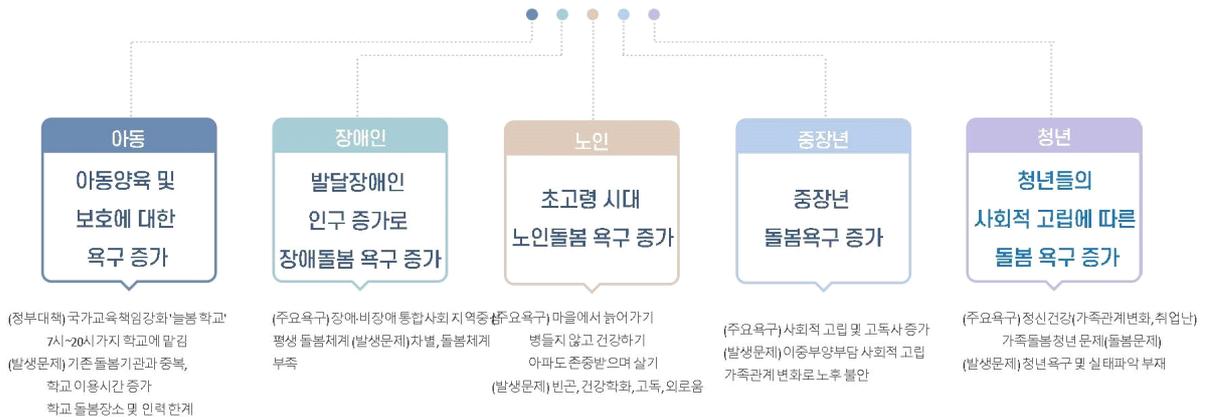
돌봄 현장



## 지역사회 돌봄욕구



## 지역사회 돌봄 욕구



## 04. 우린 어디에서



돌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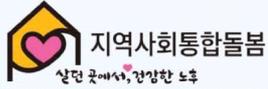
살아갈까요?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함께돌봄!

## 05. 돌봄정책 변화

## 정부의 변화된 돌봄정책



2018년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에 발맞추는 어젠다로 지역사회통합돌봄 4대 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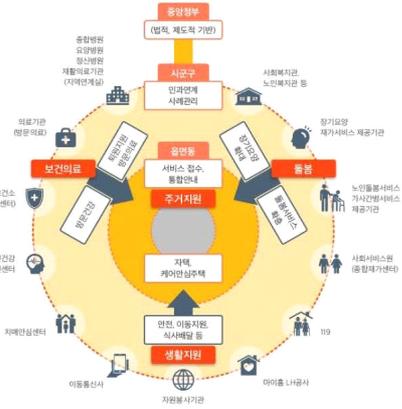
2018.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 발표

2019.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 선도사업 추진

2023. 7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2025. 1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추진



## 정부의 변화된 돌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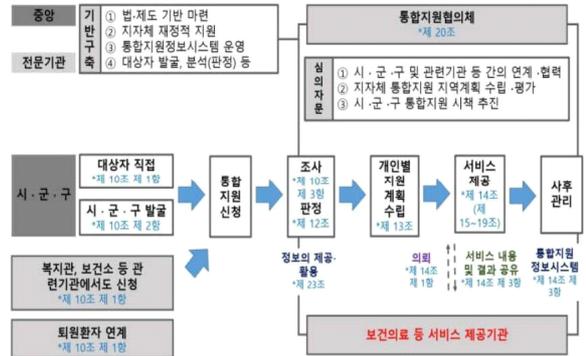
2024년 윤석열 정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4. 3. 26)

2026년 이재명 정부

지역사회 돌봄 본격 시행

- 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7
-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 시행 2027. 3. 19



출처: 정연선(2024)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복형 365함께돌봄!

## 05-1. 돌봄통합지원법

###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

제4조

지역의 돌봄 여건 조성



## 지역돌봄의 여건조성 핵심

###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체계구축

대상자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 포괄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생애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 마련

## 지역돌봄의 여건조성 핵심

###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지역주민 참여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 자기결정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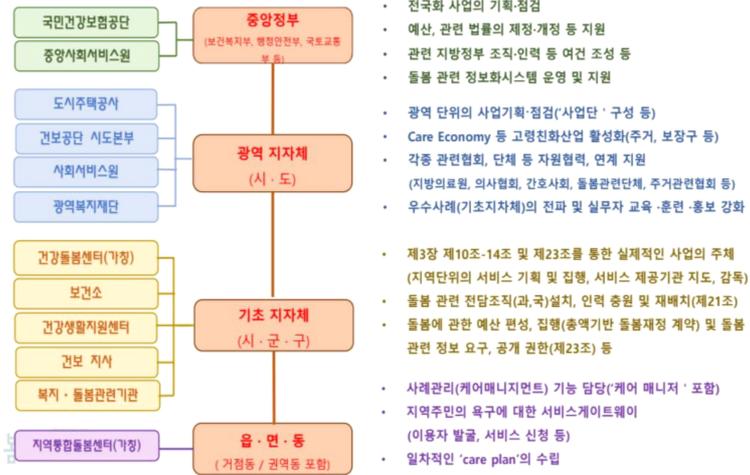
통합지원 대상자의 이용여부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보장

###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제공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제공



## 전국민돌봄 보장을 위한 행정조직의 역할



## 시·도의 주요 역할 1

### 1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 통합지원 인프라, 서비스 확충 방안
-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 전문인력의 양성

### 2 추진 성과의 평가 등



## 시.도의 주요 역할 2



### 3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 (보건의료)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간호, 재활, 복약지도 등 서비스 연계
- (건강관리 및 예방 등)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등 예방·완화, 일상생활 지원 연계
- (장기요양) 노쇠 등으로 인한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 (일상생활돌봄) 가사활동, 이동지원, IOT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 연계
- (가족 등 지원) 상담, 정보제공, 가족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 시.도의 주요 역할 3



### 4 통합지원 기반 조성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통합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처리 및 전산화 구축
- (전문인력 양성)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기관의 지정) 통합지원 대상자 관리, 조사, 분석,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시.도(사회서비스원) 역할

- 1 지역 계획 수립 컨설팅 및 매뉴얼 제공
- 2 지역 특화 서비스 기획 및 연계
- 3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품질관리
- 4 지역주민 참여 양성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연계
- 5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 시.도(사회서비스원) 역할

- 6 광역 및 시군 협의체 참여
- 7 취약지역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8 정책 연구(효과성 분석, 학술기관 협력 연구)
- 9 홍보(지역주민 인식제고)
- 10 통합지원정보 플랫폼 운영(사회보장정보원 협의)

## 기초자치단체 역할 1

### 지역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하여 시행

-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 대상자의 발굴 과 지원체계 구축
- 자원 조달과 운용
-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공급방안
- 조례.제도의 개선



## 기초자치단체 역할 2

###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주민 신청으로 대상자 선정

### 종합 판정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종합적으로 판정  
대상자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 안내

### 개인별지원계획

대상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후 안내  
- 통합지원 내용, 방법, 수량, 제공기간 및 제공 주체 등

### 기초자치단체 역할 3

####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 제공

#### 통합기반 조성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 가능  
시군구 단위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 운영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함께돌봄!

## 06. 전북형 365 함께돌봄

# 이렇게 합시다!



## 함께 돌봄

함께+돌봄 개념의 합성어로

누구나 돌봄은 필요하지만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모든 주체들과 더불어 돌봄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상호관계를 연결하여 돌봄을 함께 제공한다는 의미

주민주도성

상호성

관계성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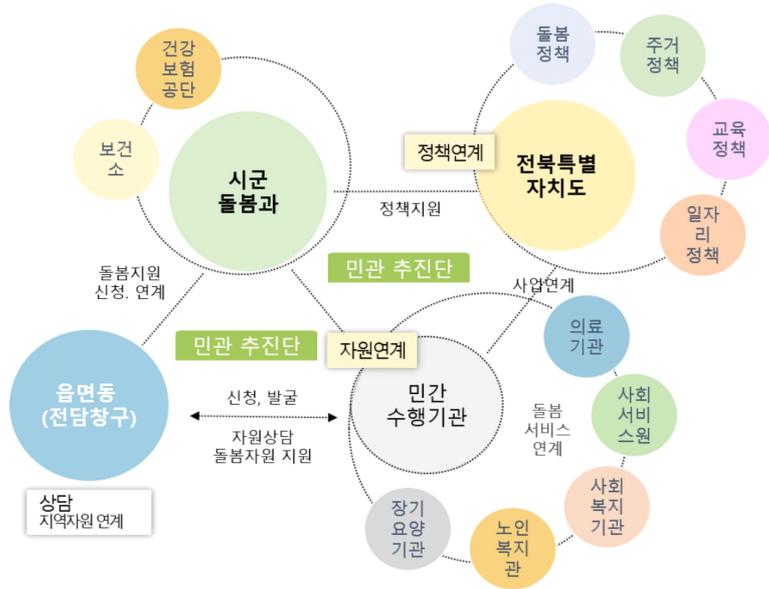
보충성

보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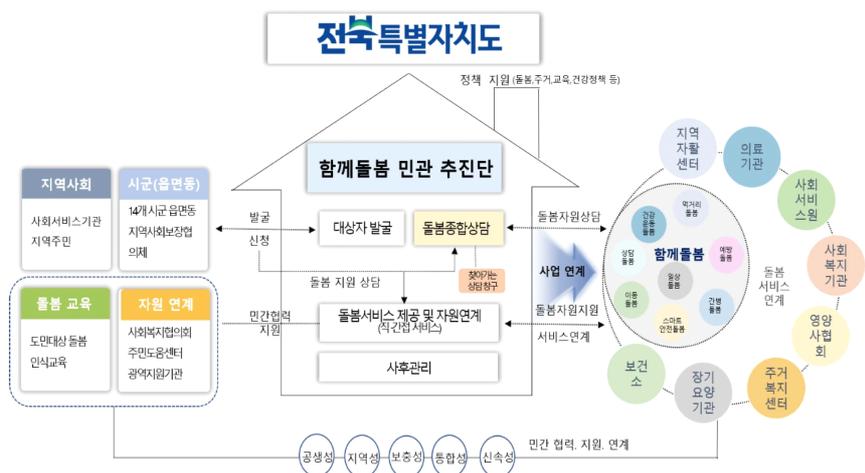
공생성



## 함께 돌봄 운영체계(안)



## 함께 돌봄 운영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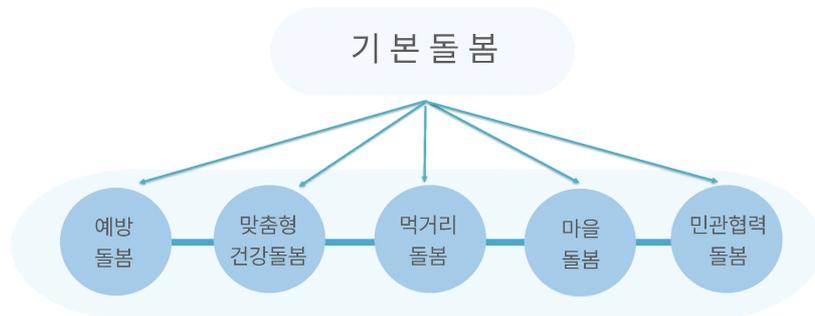
## 전북형 돌봄 방향 제시



- 01 돌봄에 대한 보편적 인식 확대
- 02 돌봄 대응에 대한 집중과 분산
- 03 지역별 상황에 맞는 돌봄 정책 및 실행
- 04 돌봄에 대한 학습과 준비
- 05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 전북형 돌봄 방향 제시

- 06 전북형 함께돌봄 방향 고민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복형 365 함께돌봄! ◦

**Thank you!**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

토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자체의 역할

김 정 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자체의 역할**

### **- 지역이 중심되는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

김 정 수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이 자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되짚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에서 볼 때, 돌봄통합지원법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작동해야 할 지역 중 하나입니다.

### **전북의 돌봄 환경: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적 시급성**

전북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2024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전국 최고 수준, 약 25.6%)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농산어촌에 거주, 고령 단독가구 및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고, 복합질환, 노쇠, 돌봄요구가 증첩, 도시보다 복지 기반시설, 의료 접근성, 인력 수급의 지역 격차 심화, 이러한 여건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지 하나의 복지 제도 도입을 넘어, 전북 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기대 효과**

제1조(목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자체 중심 전환”의 제도적 전기**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존 돌봄 정책의 연장이 아니라, 보건·복지·요양·주거를 통합하는 새로운 구조 전환입니다.

이 법이 지향하는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중심의 설계와 집행 체계 → 지자체 중심의 통합 운영 구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 → 수요자 중심의 통합 접근

분절된 사업 운영 → 지역 맞춤형 유기적 연계

특히,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생애 말기까지 존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할 책무를 진지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는 단순한 전달체계를 넘어서, 전략적 기획과 조정 능력을 갖춘 지역 복지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 **2. 지자체가 중심이 되기 위한 선결 과제**

### **가. 조직 개편과 전담 부서 설치**

지자체 내 돌봄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할 전담 부서 또는 기능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시·군·구는 노인, 장애, 아동 등 분야별로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 접근을 위한 통합적 조정 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 ‘돌봄과(통합지원과)’ 등 전담 조직의 신설과 기능 재편이 필요합니다.

### **나. 공무원 인력 운영 방식의 전환**

현금급여 관리나 대상자 조사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서비스 설계, 조정, 연계,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와 민관협력 조정 기능으로 공무원의 역

할이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대인서비스, 통합행정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전문직군 도입 및 실무지원 인력 확대도 필요합니다.

#### 다. 지자체 재정 구조 개선

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내 틈새 돌봄, 서비스 운영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한 재량 재정의 확보,

→ 민간자원과의 연계기반 마련,

→ 재정운영 방식의 유연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3. 돌봄 통합을 위한 지자체 실천 전략**

#### 가. 지역 기반 자원 체계화

공공기관, 민간기관, 복지관, 의료기관 간의 서비스 목록과 절차 일치  
중복·누락 방지를 위한 자원 연계 플랫폼 구축

#### 나. 민간기관과의 수평적 협력 구조

위수탁 관계 재정립: 지자체는 과업을 명확히, 민간은 공적 책임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정기적 협의체 운영, 실질적 사업 성과 공유 등 협업 문화 정착

#### 다. 보건의료와의 통합적 접근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 재택의료 등과의 연계

→ 돌봄에서 건강 유지와 예방 중심의 통합 서비스 체계 구현

이를 위한 지역단위 보건-복지 통합계획 수립 필요

### **4. 결론: “지자체가 움직여야 돌봄이 바뀝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법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돌봄정책의 새로운 출발이 아닌, 사회 전체의 돌봄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마중

물입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실질적 운영역량 확보, 공공-민간의 유기적 협력, 충분한 자원 마련, 보건의료와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돌봄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는가에 따라, 이 법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돌봄은 이제 지자체 복지행정의 '부가과제'가 아니라, '핵심기능'입니다. 행정체계와 예산, 조직, 인력, 그리고 민관의 관계방식까지 바꾸어야 합니다. 남은 8개월, 지자체의 변화 의지와 준비가 돌봄 정책 전환의 실질적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과 현장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담고, 주민 중심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논의가 지속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의 역할

박진희 교수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의 역할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대학)

## 1.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목적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회적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 AIP)' 실현:**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 **통합적이고 끊김 없는 지원 제공:**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단절성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임 강화:**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통합적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기존 보건의료 연계 체계의 한계점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 **분절된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로 다른 자원과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기관별로 개별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의료기관 참여 미흡:** 선도사업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고령화,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가정 방문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인력 및 역량 부족:** 통합돌봄 업무가 추가되면서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부족하였다. 담당자 변경에 따

른 역량 차이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사회 주민이 방문 재활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였음에도 실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 **법적·재정적 제약:** 의료법과 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간의 상충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며, 시범사업이 한시적 예산에 의존해 연속성이 취약한 점도 문제였다.

### 3.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방향 및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방향과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이 강조된다.

#### 가.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방향

- **통합 지원 창구 일원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상자 발굴, 조사,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 보건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권역 책임의료기관도 병원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전담 조직 신설 및 기능 강화:**
  - **지역돌봄센터:**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 주도의 사례관리 전담기구로, 노쇠 관리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합방문간호센터:** 실외 보행이 어려운 중증 노쇠 대상자에게 공공 주도의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 **재택의료센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이 환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통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민간 주도의 방문 의료 전담기관이다. 이 모델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욕구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 **다학제 팀 기반 협력 강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포괄적 평가, 케어 플랜 수립, 주기적 방문진료와 재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연계 및 공유:** 전자 건강기록(EHR)과 돌봄 플랫폼을 연계해 퇴원 정보, 건강 정보, 돌봄 계획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분류 시스템 및 모바일 전자돌봄기록(MECR) 도구를 개발해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재정 안정성 확보:** 장기요양 국고지원금의 일부를 장기요양 예방사업에 활용하는 별도 계정을 마련하고, 성과 기반 총액 계약제를 도입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재정의 지

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와 시·군·구에 보건복지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평가 및 재정 분배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통합 재가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 서비스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나.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역할

- **예방 중심 건강관리:** 정기적 건강 측정과 상담, 만성질환·치매 조기 발견, 개인별 건강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재택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의료진,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가정을 방문해 퇴원 환자 집중 관리와 건강 악화 예방, 조기 대응을 수행해야 한다.
-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치매·우울 조기 검진, 상담 및 치료 연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대상자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안녕을 증진해야 한다.
- **위기 대응 및 연계:**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 체계와 야간·휴일 긴급 돌봄 연계, 돌봄 SOS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양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실종과 치매 환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동절기 부상·입원이 증가하는 만큼 긴급 돌봄 및 방문 진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 **주민 역량 강화와 자기결정권 지원:** 건강 정보 제공과 자기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범위·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4. 결론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우리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전주시, 광주 서구, 충남 청양군 등의 시범사업 사례에서 보듯, 보건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와 복지 간 칸막이를 해소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2023a).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홍보영상. YouTube.
- 국민건강보험. (2023b). [건보인사이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편. YouTube.
- 김창오, 장숙량, 남일성, 서동민, 신동수, 등. (2022).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된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제안. 장기요양연구, 10(3), 88-129.
- 문용필, 이현복. (2023).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재택의료센터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기요양연구, 11(1), 88-114.
- 서동민. (2025).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025(2), 4-23.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15호 (2024).
- 임지연, 안나나, 이석구, 안순기. (202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공공 보건의료 연계 모델 개발.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47(1), 1-13.
- 충남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 (2023). [Session 2-2] 청양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추진사례. YouTube.

토론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성 이 순 과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



# “지역에서 존엄하게, 함께 돌보는 삶”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성이순(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

## 1. 초고령사회 전환기, 통합돌봄의 제도화와 지역의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의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 문제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5.5월 기준 도 고령화율 25.29%으로, 전국 평균(20.54%) 대비 높으며 전국 4위 (출처: 행안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그간의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단위의 재가완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환점으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재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주는 예산지원형, 나머지 6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지역 맞춤형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미참여 시군 대상 추가 공모, 통합돌봄 조례 제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발제에서 제시된 「전북형 365 함께돌봄」의 방향성과 지역 실행과정에서의 한계,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전북형 365 함께돌봄: 지향점과 현실의 간극

### ▶ 전북형 함께돌봄의 지향점

「전북형 365 함께돌봄」은 돌봄을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도민의 삶 전반에 걸친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돌봄 체계를 지향한다. 돌봄의 보편적 권리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모델을 발굴·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한계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구조적 제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① 광역 단위의 전담조직 부재와 역할 불명확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전담조직 설치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직 구성과 기능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역할이 모호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현재 고령친화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정책 기획·시군 지원·거버넌스 구축 등 광역 차원의 기능 수행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 ② 보건복지부의 준비 부족 및 부처 간 조정 미흡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기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와의 인력 확보 관련 협의 없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에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지방정부는 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만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구조다. 중앙 부처 간 사전 조율 없이 제도 시행을 강행하는 방식은 보건복지부의 준비 부족과 협의 미흡으로 인한 행정적 혼선과 지자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③ 재정적 불안정성과 사업 지속성의 제약

통합돌봄은 인력과 서비스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비 지원이 제한적이며 지방비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일부 시군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 3.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제언

### ① 광역·기초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및 전북도 총괄체계 구축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에도 전담조직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정책 기획, 시군 간 조정, 민간 연계 등 광역 단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 또한 현재 고령친화정책과에서 병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업무를 분리해, '통합돌봄과'와 같은 독립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총괄 기능과 광역 차원의 실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②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및 인력 확보 체계 마련

지자체가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액인건비 제도의 예외 적용 또는 별도 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 구성 기준과 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 인력이 실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조정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 ③ 국비 중심의 재정 지원 확대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비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시행을 앞둔 지금, 지방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4. '제도 시행'을 넘어 '실행 기반' 구축으로

통합돌봄은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핵심 복지 체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도의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돌봄체계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도는 미참여 시군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읍면동 실무자 대상 교육, 추가 공모 대응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광역 차원의 역할 정립과 지원 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토론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토론문

강 병 은 관장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토론문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관장 강병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후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말기까지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자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 가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복지서비스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역사회는 현재보다 더욱 연대하며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조각품이라 표현하고 싶다. 완성된다면 아름다운 걸작이 되겠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조각품이 돌봄통합지원법이 아닐까 싶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조각품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와 제도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지자체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현황 분석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지난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 추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167개소 중 25개소(15.0%)에 그쳤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으며 18개소(10.8%)는 시범사업 추진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은 제3장(통합지원절차) 제10조(신청, 발굴, 조사 등),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제12조(종합판정 등), 제13조(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및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의 규정을 통하여, 통합지원의 실제적 절차의 주체(권한과 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실제적 절차의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 이기에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한 돌봄의 성과는 결국 지자체가 본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추진하는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구는 돌봄통합지원법 추진을 위한 준비를 어느 수준까지 추진하였는가에 대해, 그리고 민간복지전달체계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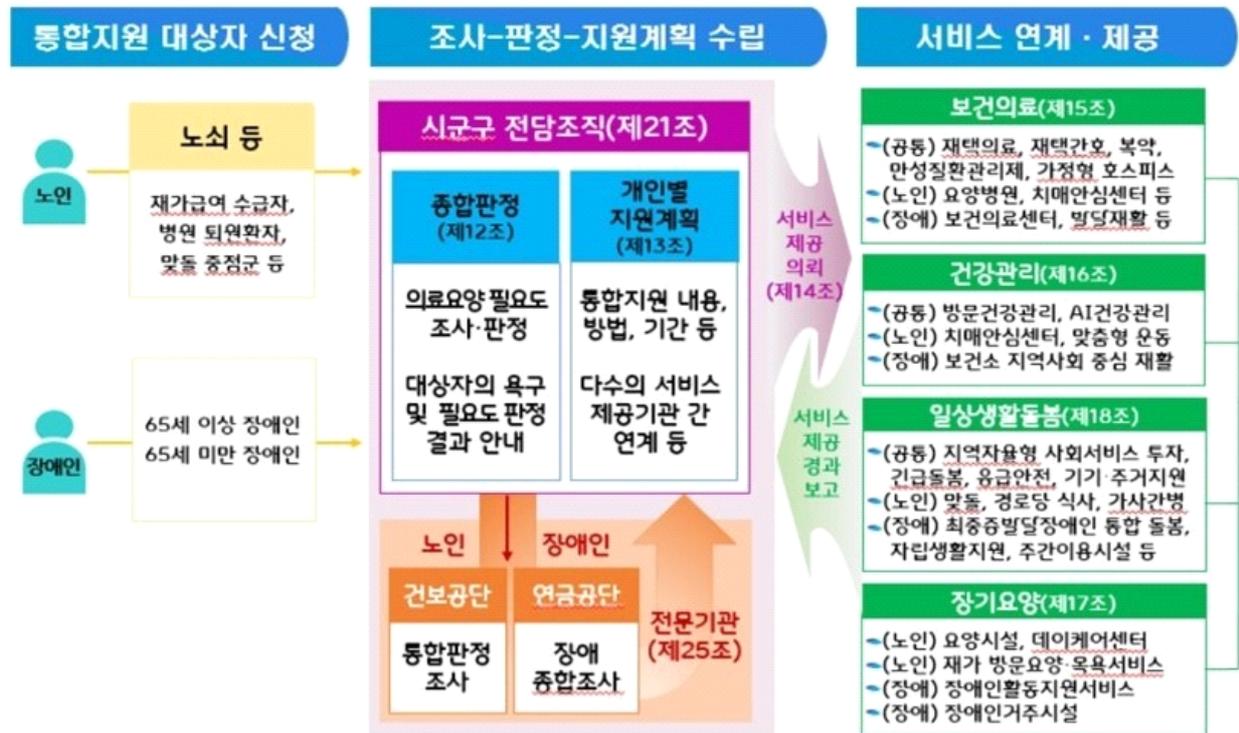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 함께돌봄! 인용

\*\* 뉴시스, “통합돌봄 1년 뒤 시행인데... 지자체 85% ‘사업 잘 몰라’”, 2025.03.02.

\*\*\* 전북도의회,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변재관, 2025.01.13.

에 대해 우선적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5년 1월 13일, 전북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국주영은 도의원은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자체의 노력이 결국 사업의 성과와 직결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25년 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의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주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등 총 5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통합지원법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시범사업의 주 대상은 노인이었고, 서비스 내용은 보건과 의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존 노인 중심의 시범사업에서 장애인을 돌봄의 영역으로 포함시켰다는 건 장애인복지계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장애인 돌봄 체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서비스로 연계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에서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영역은 ①보건의료분야에서 보건의료센터, 발달재활, ②건강관리영역에서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③일상생활돌봄영역에서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자립생활지원, 주간이용시설 등, ④장기요양 영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구분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을 토대로 장애인의 자립, 거주 등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돌봄의 핵심은 결국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돌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돌봄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확인하는 것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나 제도의 추가가 아닌 통합적 체계라고는 하지만, 만약 돌봄통합지원법이 돌보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구성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볼 문제다.

예를 들어 보자.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전북도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2025년 5월말 현재 24시간 개별지원 4명, 주간 개별지원 13명, 주간 그룹형 지원 32명이다\*\*\*\*\*. 24시간 개별지원과 주간 개별지원은 이용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심각한 장애 정도로 공적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최종증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높은 만족도는 이용자와 보호자가 본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걸 반증한다. 문제는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중 24시간 개별지원이 종료되면, 이후 어떤 서비스가 24시간 개별지원을 대체할 것인가이다. 최종증발달장애인이 가야할 곳은 어디인가? 사업이 시작된 지 일년 남짓한 훌륭한 사업의 미래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게 기우일지 모르나, 반대로 일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종증발달장애인의 향후 돌봄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싶다.

\*\*\*\*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는 서비스 연계·제공을 보건의료(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건강관리(제16조), 일상생활돌봄(제18조), 장기요양(제17조)로 구분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장애인, 노인 공통) 재택의료, 복약, 만성질환관리제, 가정형 호스피스, (노인) 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등, (장애) 보건의료센터, 발달재활 등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건강관리는 (공통) 방문건강관리, AI건강관리, (노인)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운동, (장애)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로 구성된다. 일상생활돌봄은 (공통)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긴급돌봄, 응급안전, 기기·주거지원, (노인) 경로당 식시, 가사간병, (장애)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자립생활지원, 주간이용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은 (노인)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재가방문요양목욕서비스, (장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로 구성된다.

\*\*\*\*\*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한 수치임. 24시간 개별지원은 주중 지역사회 낮 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 개별지원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낮 시간 동안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 그룹형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의 '2024년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만족도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이보다 더 높은 96.3점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또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정신적 안정, 회복 촉진, 지역사회 정착 등 삶의 전 영역에서의 기능적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비 수급률이 현저히 낮고 평균 급여량이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다는 점은 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종합조사 중간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표를 개선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이 1개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장애인이 위기에 놓일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14일 ‘정신장애인 인권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 에서 위기 쉼터와 지역사회전환시설이 광역시·도 단위에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및 운영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돌봄은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돌봄의 필요성에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실효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통합지원법은 절차와 체계는 물론이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행복까지 보장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끝으로 발제자 서양열 원장의 발제 제목처럼 ‘도민이 함께 든든한 전북형 365 함께 돌봄’ 이 이루어지는 전북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믿음을 가지며 본 사업을 통해 도민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에이블뉴스, 2021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장애인은 1만 845명, 이 중 82.3%인 8,923명이 수급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733명이 신청했으나 61.5%인 451명만이 수급을 인정받아 신청 대비 수급 인정률이 약 20% 차이를 보였다.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토론문

이 중 섭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 돌봄통합지원법 토론회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돌봄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립은둔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위기청년의 증가로 인해 기존 돌봄체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새로운 돌봄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돌봄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앞선 서양렬 원장님의 발제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홀로생활하는 1인 가구도 35.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도 약 5%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의 맞벌이 가구는 2021년 말 기준 24.6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54.3%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와 함께 주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아동돌봄이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도 일시적인 돌봄의 부재가 발생하는 등 돌봄욕구의 다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안전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내년부터 본격시행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존의 가정 혹은 지역에서 과편적으로 수행해왔던 돌봄정책을 국가주도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돌봄정책은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돌봄체계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돌봄까지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돌봄수요의 증가와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정책은 돌봄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이 파편화되어 있고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에 따라서 분절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와 요양 중심의 단순돌봄을 뛰어넘어 심리·정서,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돌봄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민관 돌봄체계의 연계 강화로 돌봄서비스의 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북형 돌봄체계는 국가돌봄과 기존 지역돌봄과 연계하여 3단계로 다층의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의 돌봄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으로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으로 국가돌봄과 연계한 돌봄의 확장 지원 추진

두 번째는 새로운 돌봄수요 즉, 新돌봄수요 대응 돌봄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돌봄사각지대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돌봄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 즉, 돌봄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돌봄수요(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소외 중장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정책이 가능하도록 민관의 다양한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

봄전달체계를 정교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사회적 고립의 심화에 따른 고립은둔 청년 및 소외 중장년 가구 등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북형 돌봄체계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 즉, 돌봄필요도에 따른 돌봄수요층 대상 통합돌봄과 중위소득 일정 수준이하의 모든 도민에게는 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돌봄을 추진해야 한다. 돌봄필요도 조사에 기반하여 돌봄필요정도와 돌봄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되 중위소득 의 특정구간을 중심으로 돌봄수요가 있는 중산층 등의 도민에게는 무상 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소득수준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전북자치도는 국가의 돌봄체계와 연동하여 모든 도민에게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북형 돌봄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특별돌봄서비스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단계적 전면시행의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북형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과 전담 조직 등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구조화해야 한다. 전담조직은 반드시 노인만인 아닌 장애인과 아동, 청년, 일반 지역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조직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설계와 운영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양 병 준 사무국장  
전북희망나눔재단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양 병 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 1. 돌봄통합지원법은

### (1) 2024년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

-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성과임과 동시에 2020년과 2021년 발의되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안'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돌봄통합(통합돌봄)이 아닌 돌봄통합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
- 2026년부터 시행예정인데, 정부, 시·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지자체도 그 전까지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재원마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통합지원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 (2)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실현은 가능한가?

- 이전에 추진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같은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 '무늬'만 달라진 정책은 아닌지?

#### 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 전담인력 확대와 예산 편성 및 지원
- 기초지자체의 책임 있는 준비와 제도 구축이 선행
- 정책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복지관(사회복지사)의 실행역량 강화 필수

#### ②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닌 한계와 쟁점

- \* 책임은 기초지자체에 있지만 권한과 자원은 제한적인 모순
-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 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 지자체는 인력부족, 부서 간 연계 미비, 예산 편성의 유보 등으로 준비가 미흡
- 실제 돌봄통합을 총괄하고 이끌어갈 관리체계 반드시 필요
- 통합판정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중앙 기관에 위탁되는 구조

#### ③ 통합 돌봄이 진정한 의미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 행정과 밀도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기관과의 연계 필요
-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기관, 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사례 연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각 지역의 병원, 보건소, 요양기관, 복지관, 시민조직 등과의 협업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법적 행정적 틀로 제도화 해야 함

- 가칭 '지역통합돌봄 실무협의체'나 '돌봄사회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의사결정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을 함께 부여받는 구조가 필요

## 2. 사회복지 주권을 통한 '돌봄통합' 실현

### (1) 지금은 국민주권정부! 국민들이 직접적인 삶의 행복감, 주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복지도 사회복지주권 발현할 때!
- 돌봄통합지원법은 당사자(사회복지사) 주권을 통해서 시작된다.
  - > 1차적으로 사회복지 행정, 민간기관,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동의 과제가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나부터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 >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인내하고 풀어내야 함
  - > 정부나 행정이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매우 중요!
- 돌봄사회? 기본사회?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소통과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함

### (2)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서 사회복지 영역이 요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케어'는 방향을 제시, 전달체계 등 실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지역의 과제로 넘김
- 지역에서 행정을 중심으로 민간과 지역사회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음
-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에, 지금부터 함께 논의하고 '기본돌봄'에 대한, 나아가 '전북형 기본돌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함.

## ※ 참고자료

### 1.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

- 돌봄 노동 가치 저평가와 임금 체계 미흡
- 2024년 현재, 국내 돌봄노동자 규모는 140만명으로 추산
-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소정실근로시간은 114.03시간이고, 급여총액은 월 153만7천원
  - > 여성노동자 비율이 92%인데, 여성의 월 급여총액을 보면 여성은 149만2천원이지만 남성은 205만6천원으로 차이가 큼
- 2024.03.07.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안(돌봄근로자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 진행
- 2024.10.29.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 2.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

### (1) 최근 논의

- 2024.05.02.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1,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 2024.06.04.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2,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
- 파편화된 돌봄 정책을 아우를 상위법 필요성 제기,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
- 2025.05.16.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진행
- 2025.06.16. 돌봄기본법 발의(돌봄의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 돌봄 노동자 권리, 돌봄청 신설 내용 등)

#### □ 돌봄청: 숙의를 통해서

- 아동돌봄은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성인돌봄은 주로 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이 두 분야를 통합하여 나갈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더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

####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돌봄

- 막대한 공적 재원으로 돌봄서비스를 해야하고 공적 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서비스의 질 확보
- 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혜 대상으로서의 책무성도 필요(복지세 신설 등)
-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 돌봄노동자, 비공식돌봄자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2) 돌봄기본법 제정 논의와 더불어

-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 아니라, 돌봄은 사회적 권리라는 인식 필요
- ② 돌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과 보완 필요
- ③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④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과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수
- ⑤ 실태조사와 실행 계획을 통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 인프라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부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부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보건복지부(통합돌봄추진단) 044-202-3043, 30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시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 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4.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의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퇴원 또는 퇴소 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

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연계와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점검과 변경·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 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 “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

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연계 등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3.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4.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5.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
6. 그 밖에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등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제13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통합지원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주체,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6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 3. 26.] 제26조

**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조사
3.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0445호, 2024. 9. 20.> (간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9조제8항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